

瑞山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1. 提出者：瑞山市長

2. 提出日字：1998. 8. 21

3. 提案理由

-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한시기구 및 성격상 유사기능과 중복 부서가 통폐합으로 업무가 재분장 되므로 정원을 재조정하기 위함.

4. 主要骨子

- 안 제2조 제1호 시본청 정원 " 410명" 을 " 386명" 으로, 동조 제3호 직속기관 " 155명" 을 " 133명" 으로 동조 제4호 사업소 " 67명" 을 " 60명" 으로, 동조 제5호 대산출장소 폐지로 삭제하고, 동조 제6호 읍·면·동 " 351명" 을 " 302명" 으로 조정함.

5. 檢討意見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제정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 서산시 기구개편 계획에 의거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과 하부행정기관 설치 조례가 폐지 내지 통폐합 및 기구가 축소조정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서
- 시본청 기구는 3국 24실과에서 2국 17실과로 조정 1국 7실과가 통합 축소 개편되고,
- 2개 직속기관과 1개출장소 6개사업소 16개 읍.면.동중에서 2개직속기관 4개사업소 15개 읍.면.동으로 조정 1개출장소 2개사업소 1개동을 폐지 내지 통합 축소되므로 인하여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도 감축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도 개정 하려는 것으로
-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상 정원의 총수 1007명중 감소되는 정원수는 시본청 24명, 직속기관 22명, 사업소 7명 출장소 8명, 읍.면.동 49명에 모두 110명(△10,9%)이 감축 되어 정원 총수는 897명으로 조정이 되며,
- 기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정원을 초과하는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현원 관리는 2000년말까지 별정직은 99년말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있어서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이 되고,
- 정원을 초과하는 인력관리 문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해소 방안이 필히 강구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